

『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신라불교초전지에 건전한 휴식공간 및 역사문화 교육장 제공을 위한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과 모레가정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. 보전과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의 모레가정문화센터 조성 관련 부지를 매입코자 함

3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】

- ☐ 신라불교초전지 문화체험마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모레가정문화센터 조성 부지 매입

○ 토 지 : 3필지 10,846m²

○ 지 상 물 : 건물, 사택, 입목 등

○ 예정가격 : 386,926천원(가감정가 기준)

※ 구미시 교육청에서 감정 의뢰하여 결정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신라불교초전지 문화체험마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모레가정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43-1번지 외 2필지의 송도초등학교 폐교부지 10,846m² 및 지상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신라불교초전지 문화체험마을 조성과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모레가정문화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사업비 확보방안, 관련 기관과의 협의,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